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115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진영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5.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1) 2017. 5. 23. 접수 제35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48459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9. 8. ‘D는 원고에게 25,594,981원 및 그중 6,404,275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의 부 E은 2015. 1. 16.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와 피고 B이 있다.

다.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2017.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제356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는 무효이므로, 각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5.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015. 1. 16.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4.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별 지 목 록

1.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면적 132m²

2.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백담초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지층 70.02m²

1층 64.44m²

2층 64.44m²

옥탑 8.91m²

3.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잡종지 10m²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